

의안번호	제 125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영복 의원 외 8인
발의연월일	2007년 6월 28일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영복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 제안이유

국비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한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물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10년간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 및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사후관리 기간 10년이 2005년 5월 28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도유재산인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시판매장의 기능에 도내에서 생산된 농촌 특산단지제품,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전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 나.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을 명확히 규정(안 제4조)
 - (1)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촌 특산단지 제품
 - (2)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 (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과 최소한의 생필품 다만,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페센트 이내
 - 다. 운영위탁대상자를 도내 농업인 단체로 추가 확대하였으며, 위탁

기간을 종전 2년 이내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규정을 적용하여 3년 이내로 조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전시판매 사용자의 운영상태 ·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도록 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특산단지의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청주시 상당구 울량동 877번지에 둔다.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에서 생산된 농촌 특산단지제품 및 농·수·축산물 등의 전시·판매 및 이를 위한 매장 제공
2. 농촌특산단지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시장정보 및 상담창구 역할
3. 농촌특산단지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전시·판매행사 개최 등
판촉·홍보
4. 농촌특산단지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

한 상호 정보교환

5. 농촌특산단지 활성화를 위한 상담실 운영
6. 기타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촌 특산단지 제품
2.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과 최소한의 생필품 다만, 최소한의 생활필수품 판매시설은 연건평의 15페센트 이내로 한다.
4. 비교 전시·판매를 위한 타 시·도 및 외국의 농어촌특산품. 다만, 도지사가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 한함.

제5조(운영의 위탁)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청북도연합회 또는 도내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한 재산의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4. 기타 도지사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

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

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전시판매사용자의 운영상태·회계 및 재산

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충청북도 농촌 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관련법령발췌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 시장·군수는 농어촌의 부존자원과 유휴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이하 “특산단지”라 한다)를 육성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 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 등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재산등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사용 · 수익허기기간) ① 행정재산 등의 사용 · 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채납한 후 무상 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 · 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 · 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 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기간 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첫 해의 가격결정 후 5년 이내에는 가격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 평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하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 토지 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출한다. 다만, 재산의 규모 및 형태, 특수한 부대설비, 증·개축, 주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 여건 변동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에 현저한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시 가목의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산출한 후 그 다음 연도 이후에는 나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첫째 연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대부할 경우에는 「지방세 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할 수 있다.

나. 둘째 연도 이후에는 가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의 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 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갱신계약기간을 포함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 해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당해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농경지를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전년도 농업총수익의 단위면적당 수입의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대부료의 상한으로 할 수 있다.